

의안번호	제 288 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5년 11 월 4 일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한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8
----------	-----

발의연월일 : 2015년 11 월 4 일

발 의 자 : 박한범, 박봉순, 박종규
임병운, 장선배, 최병운
김인수

1. 제정이유

- 충청도 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도 내 경로당 수 : 4,031개 (2015. 7월 기준)

2. 주요내용

- 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 운영실태 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
- 나.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안 제6조)
 - 운영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봉사활동 및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비 등
- 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규정 (안 제7, 8조)
 - 보건복지부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2012.05.25.)에 따라 대한노인회 위탁
- 라.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 포상 규정 (안 제13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5-31호
- 라. 협 의 :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협의
- 마.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 “노인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이 교부된 충청북도 내 경로당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로당 이용 노인을 위한 교육, 여가·문화활동, 봉사활동, 경제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관한 사항
4. 공동작업장 운영 등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경로당 지원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노인복지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설비 사업비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비
4. 경로당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참여활동 관련 사업비
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경제활동 관련 사업비
6.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기능)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기본방향 설정과 사업추진
2.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의 연계, 협력구축에 관한 사항
4. 시·군 프로그램 관리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로당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9조(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지원의 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제11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이바지한 사람
2.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이바지한 기관 및 단체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6.7.>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한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경로당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

2. 비용 발생 요인

- 경로당 운영 경비, 여가프로그램 사업, 광역지원센터 운영 사업

3. 관련조문

- 노인복지법 제37조, 제37조의 2,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칭) 충청북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광역지원센터 지원의 소요경비 산출

나. 추계 결과

- 경로당 운영비 지원 : 18,177,300천원 (매년)
-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 38,933,176천원 (매년)
- 9988 행복나누미 운영 : 29,810,664천원 (매년)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 1,385,754 (매년)

다. 재원조달방안

- 경로당 운영비 지원 : 도비 3%, 시군비 97%
-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 국비 25%, 도비 20%, 시군비 55%
- 9988 행복나누미 운영 : 도비 30%, 시군비 70%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 국비 50%, 도비 5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장 김 성 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16,822,014	17,831,536	17,856,646	17,884,803	17,911,895	88,306,894
국 비		2,078,025	2,080,091	2,083,894	2,089,133	2,093,431	10,424,574
도 비		3,352,788	3,648,185	3,651,524	3,655,931	3,659,667	17,968,095
시군비		11,391,201	12,103,260	12,121,228	12,139,739	12,158,797	59,914,226
세 출		16,822,014	17,831,536	17,856,646	17,884,803	17,911,895	88,306,894
경로당 운영비		3,611,700	3,627,900	3,637,800	3,645,000	3,654,900	18,177,300
경로당 냉난방비		7,749,600	7,769,7710	7,784,920	7,805,877	7,823,069	38,933,176
9988 행복나누미		5,179,464	6,157,800	6,157,800	6,157,800	6,157,800	29,810,664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281,250	276,126	276,126	276,126	276,126	1,385,754
재원 조달		16,822,014	17,831,536	17,856,646	17,884,803	17,911,895	88,306,894
의존 재원	소 계	2,078,025	2,080,091	2,083,894	2,089,133	2,093,431	10,424,574
	보조금	2,078,025	2,080,091	2,083,894	2,089,133	2,093,431	10,424,574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352,788	3,648,185	3,651,524	3,655,931	3,659,667	17,968,095
	지방세	3,352,788	3,648,185	3,651,524	3,655,931	3,659,667	17,968,09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시·군비		11,391,201	12,103,260	12,121,228	12,139,739	12,158,797	59,914,226
기 타 (민간 자부담)							